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6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1호, 2024.4.12.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4년 4월 15일

보건복지부 장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
일부개정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편 제2부 소아진료 다음에 [별지]와 같이 제3부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

제3부 고위험임산부·신생아 진료

[산정지침]

1.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

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「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지원」 사업으로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서, 신생아 중환자실 입실 환자에게 집중 치료를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.

분류번호	코드	분 류	금액(원)
공공-3		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	
	JA300	가.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I	100,000
	JA301	나.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II	50,000

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<u><신설></u>	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제3부 고위험임산부·신생아 진료 <u>[산정지침]</u> 1. <u>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</u> <u>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「신생아집중치료</u> <u>지역센터지원」 사업으로 지정된 신생아 집</u> <u>중치료 지역센터에서, 신생아 중환자실 입</u> <u>실 환자에게 집중치료를 수행한 경우 산정</u> <u>한다.</u> 공공-3 <u>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</u> JA300 가. <u>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</u> <u>수가 I</u>100,000원 JA301 나. <u>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</u> <u>수가 II</u>50,000원